

#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현행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상의 “단체”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구매 관련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단체”의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제2호)

- 단체 ⇒ 단체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는 단체, 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

나.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우선 구매 조항 개정

-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⇒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## 3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3. 12 ~ 4. 2(의견없음)

#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호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는 단체, 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”로 한다.  
제4조 중 “구매하여야 한다”를 “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공공기관” 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4조(우선구매촉진)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단체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조를 받는 단체, 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우선구매촉진) ----- ----- -----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9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. 4. 6.(금)

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2. 4. 9.(월)

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4. 18.(수)

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상의 “단체”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구매 관련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가. “단체”의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제2호)

- 단체 ⇒ 단체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는 단체, 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

나.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우선 구매 조항 개정

-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⇒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4. 검토보고(전문위원 손중익)

○ “단체”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자구해석에 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

○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조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

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